

2020) 10개년 건축설비기사 과년도문제해설 2차 정오표[2020.9.1]

[5과목. 건축설비관계법규]

953페이지 ㉮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. - 1)표

한솔아카데미 

| 구 분 | 소방안전관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| 제 외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특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 | ㉮ 5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㉯ 30층 이상(지하층을 포함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는 제외함) ㉺ ㉮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이 200,000m ² 이상인 것(아파트는 제외함) | 동·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·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제조소등, 지하구를 제외 |
| 1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 | ㉮ 30층 이상(지하층은 제외함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㉯ 연면적 15,000m ² 이상인 것(아파트는 제외함) ㉺ ㉮에 해당하지 않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는 제외함) ㉻ 가연성가스를 1,000톤 이상 저장·취급하는 시설 | 동·식물원,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·취급하는 창고, 위험물제조소등, 지하구를 제외 |
| 2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 | ㉮ 옥내소화전, 스프링클러설비·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(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)를 설치한 것 ㉯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저장·취급하는 시설 ㉺ 지하구 ㉻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| 특급,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|
| 3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 |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 | 위 1~3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|

| 페이지 | 항 목 | 오 | 정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868 | 2019년 4회 5번 문제 수정 | 3상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20[V]인 3상 교류의 상전압은? | 3상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20[V]인 3상 교류의 상전압은?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871 | 2019년 4회 17번 해설 수정 | $N = 37.5 = 38$ 개 | <u>$N = 48$개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906 | 1. 방화구획 표 내용 수정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건축물의 규모</th> <th>구 획 기 준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층 이하의 층</td> <td>바닥면적 1,000m² (3,000m²) 이내마다 구획</td> <td rowspan="4">* ()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임.</td> </tr> <tr> <td>지상층, 지하층</td> <td>매층마다 구획(면적에 무관)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11층 이상의 층</td> <td>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</td> <td>바닥면적 500m² (1,500m²) 이내마다 구획</td> </tr> <tr> <td>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</td> <td>바닥면적 200m² (600m²) 이내마다 구획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건축물의 규모 | 구 획 기 준 | 비 고 | 10층 이하의 층 | 바닥면적 1,000m ² (3,000m ²) 이내마다 구획 | * ()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임. | 지상층, 지하층 | 매층마다 구획(면적에 무관) | 11층 이상의 층 |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| 바닥면적 500m ² (1,500m ²) 이내마다 구획 |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| 바닥면적 200m ² (600m ²) 이내마다 구획 |
| | | 건축물의 규모 | 구 획 기 준 | 비 고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10층 이하의 층 | 바닥면적 1,000m ² (3,000m ²) 이내마다 구획 | * ()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임.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지상층, 지하층 | 매층마다 구획(면적에 무관)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1층 이상의 층 |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| 바닥면적 500m ² (1,500m ²) 이내마다 구획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| 바닥면적 200m ² (600m ²) 이내마다 구획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u>필로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942 | 제2편 소방시설법 ① 총칙 1. 목적 수정 | 이 법은 화재와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·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<u>이 법은 화재와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·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